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0
----------	------

2014년 3월 4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욱)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을 위해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부모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은 2012년 11월 1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제62조¹⁾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청소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2012년 20,237명, 2013년 기준 29,112명)해 왔으나,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예.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미흡해 왔던 바, 이를 확대·강화하는 등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을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성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 아동인권교육 실적 (2012-2013)〉

(단위:명)

연도	참가대상	계	유 형 별 구 분								
			유아	초등 학생	청소년	양육/이용 시설 아동	유아교육 기관교사	초등 교사	시설 종사자	부모	글짓기, 그림 그리기
2012	기관(개소)	61	22	9	-	11	9	-	10	-	-
	인원(명)	20,237	3,702	13,605	-	1,530	539	-	251	87	523
2013	기관(개소)	71	16	11	5	6	12	13	8	-	-
	인원(명)	29,112	4,176	21,518	945	655	308	184	179	260	887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나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상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는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각종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과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상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밖에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상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00
----------	------

제출년월일 : 2014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 나.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육을 위해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4. 5. 1 ~ 2016. 12. 31(2년 8월)
- 위탁사무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관련 사무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 부모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업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등
- 소요예산 : 140백만원(2014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

○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동청소년담당관 권리팀 최희곤(☎ 2133-5156)